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예정자, 예비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본 주택 특별공급 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https://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등·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2024.11.29.(금) 예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1번길 9
- 건축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2층 ~ 34층 10개동 총 1,302세대 중 일반분양 200세대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1,302세대 중 일반분양 200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19세대)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면적(m ²)					배정 세대수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등)	계약면적	확정	(예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059.9840A	59A	59.9840	19.7640	79.7480	32.7600	112.5080	1	(5)
	059.6290B	59B	59.6290	19.8500	79.4790	32.5680	112.0470	2	(10)
	059.9560C	59C	59.9560	19.8980	79.8540	32.7450	112.5990	1	(5)
	059.9440D	59D	59.9440	20.2320	80.1760	32.7390	112.9150	5	(25)
	059.9910E	59E	59.9910	19.8820	79.8730	32.7640	112.6370	1	(5)
	059.9770F	59F	59.9770	20.0180	79.9950	32.7540	112.7490	-	-
	084.3850A	84A	84.3850	26.7620	111.1470	46.0870	157.2340	2	(10)
	084.9200B	84B	84.9200	26.9570	111.8770	46.3780	158.2550	1	(5)
	084.9290C	84C	84.9290	27.0600	111.9890	46.3850	158.3740	4	(20)
	084.8040D	84D	84.8040	26.8760	111.6800	46.3160	157.9960	1	(5)
	084.8430E	84E	84.8430	26.7100	111.5530	46.3360	157.8890	1	(5)
	099.9350	99	99.9350	31.8980	131.8330	54.5800	186.4130	-	-
합계							19	95	

※ 상기 공급내역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단위 : 세대)

구 분	배정세대(예비입주자)												배정 세대수	
	59A	59B	59C	59D	59E	59F	84A	84B	84C	84D	84E	99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	-	-	1(5)	1(5)	-	-	-	1(5)	-	1(5)	-	4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1(5)	-	1(5)	-	-	1(5)	-	1(5)	-	-	-	4	(20)
중소기업근로자	-	1(5)	1(5)	2(10)	-	-	1(5)	-	2(10)	-	-	-	7	(35)
장애인	1(5)	-	-	1(5)	-	-	-	1(5)	-	1(5)	-	-	4	(20)
합계	1(5)	2(10)	1(5)	5(25)	1(5)	-	2(10)	1(5)	4(20)	1(5)	1(5)	-	19	(95)

※ 2023.03.3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50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4.12.06.(금) 예정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청약신청	2024.12.16.(월) 예정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앱 - 인터넷 청약접수(09:00~17:30)
당첨자 발표	2024.12.26.(목) 예정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 앱에서 조회가능

-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분양사무실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분양사무실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분양사무실로 별도 문의)
-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공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 택 요 건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	--

청약 자 격 요 건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분 - 청약통장 가입요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p> <p>■ [청약예금의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부산광역시</th> <th>울산광역시</th> <th>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p>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Ⅲ 동 · 호수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IV 유의사항

- 상기 분양일정은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특별공급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카달로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V 분양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

- 분양사무실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1번길 9,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 상가 1층 618호 분양 사무실
- 분양사무실 전화번호 : 051-245-2906